

보도 일시	2022. 3. 13.(일) 12:00 2022. 3. 14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11.(금)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부희 (044-202-7454)
		담당자	사무관 김양언 (044-202-7460) 주무관 정진성 (044-202-7461)

“재취업 성공, 기업에서 지원합니다”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적극 지원

- “퇴직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재취업 교육을 계기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장·단기 목표, 실천 계획을 쓰면서 앞으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”

<‘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으로 다시 찾은 희망’, ○○기업에 근무하는 ○씨>

- “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퇴직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. 다양한 경로의 자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는 장기적인 생애 설계를 도왔고, 기업에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직장 생활 동안 있을 단 한번의 교육 기회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”

<‘근로자에게 단 한 번 오는 기회, 기업이 뒷받침해야’, (주)○○ 인재교육팀 ㄱ씨>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근로자 1,000명 이상 기업 1,043개소*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,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.

* 2020년도 958개소 → 2021년도 1,031개소 → 2022년도 1,043개소

-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, ‘20.5.1.부터 근로자 수 1,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.

<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>



□ 시행 첫해인 '20년에 1,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, 총 725개소(75.7%)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'21년 제도 운영결과는 올해 3월말까지 기업의 운영결과를 제출받아 모니터링 예정

○ '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,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%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%p 상승한 것이다.

*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비율('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) : 1,000명 이상 대기업(19.5%)

□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,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

○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(302개소)하고 있으며,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.

○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,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,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.

*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시 예정(4월초)

○ 아울러, 1,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.

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



□ 추진배경

-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·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
 - ‘20.5.1. 1000명 이상 대기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- * 「고령자고용법」 제21조의3(’19.4.30. 개정, ‘20.5.1. 시행)

□ 주요 내용

- ① 의무 사업주: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,000명 이상 사업
- ② 의무 제공 근로자: 1년 이상(계약직은 3년 이상)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,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
 - * 근로자의 참여 거부: 질병,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하는 등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 의사 확인 시 제외
- 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: 진로·생애경력설계(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), 취업알선, 취·창업교육
 - *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
- ④ 제공 시기: 해당 근로자 이직(예정)일 직전 3년 이내 제공
 - * 경영상 해고,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전 1년, 이직후 6개월 이내 제공
- ⑤ 제공 방식: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, 전문기관*에 위탁하여 제공, 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
 - *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·무료 직업소개소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위탁기관
- ⑥ 운영체계: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 제출